

부산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523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5233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1033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1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103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억 1,16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1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우선 원고는, 제1심법원이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B 주식회사가 2018. 9. 5.까지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던 합계 4,837,594,451원의 채무를 중소기업은행과의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 또는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던 D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B 주식회사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부 대출계약을 인수하면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특정한 거래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 전 회사인 D 주식회사의 합병 당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위 인정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담보를 취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자금 등과 같이 자금실행 후 담보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약(해지조건 등)을 부여하여 보증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 사이에 신용보증 계약이 체결된 대상채무는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등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 등 참조), 위 용어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계약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 담보를 위한 물적 담보권설정계약을 기업과 사이에 체결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고 하여 나아가 금융회사와 기업 사이에 그 대상채무에 관하여 물적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기술보증기금이 금융회사와 기업 사이에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피담보채무를 대상채무로 하여 그 기업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등은 없는 점, ③ 만약 기술보증기금이 금융회사와 기업 사이에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을 조건으로 기업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금융회사와 기업 사이에 체결된 담보권설정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기술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부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박진웅, 판사 배동한

별지